

##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및 정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일시: 2021 년 10 월 18 일 월요일 오전 10 시

2. 장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번길 58, 501 호 (씨즈타워) (주)씨프로 회의실

3. 회의목적사항

제 1 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변경의 건

제 2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

제 3 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
4.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임시주주총회 참석장(별첨)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(별첨), 대리인의 신분증

2021 년 10 월 1 일

주식회사 씨프로

대표이사 이영수 (직인생략)

[별첨]

## 참 석 장

본인은 주식회사 씨프로의 아래 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.

1. 총회의 명칭: 임시주주총회
2. 일시: 2021 년 10 월 18 일 월요일 오전 10 시
3. 장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번길 58, 501 호 (씨즈타워) (주)씨프로 회의실

2021 년 10 월 18 일

주주 성명(또는 상호):

(서명 또는 날인)

[별첨]

## 위임장

본인은 2021년 10월 18일에 개최하는 주식회사 씨프로의 임시주주총회(그 속회, 연회 포함)에서 아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.

### 다음

#### 1. 소유주식 현황

- 1) 소유주식의 종류:
- 2) 소유주식의 수:
- 3) 위임할 주식 수: 위 주식 전부

#### 2. 대리인 성함: (주민등록번호: )

- 1) 본 위임장에 위임인(주주)의 인감을 날인하시고 위임인(주주)의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 주세요.
- 2) 대리인께서 본 위임장을 총회장에 제출하실 때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.

2021년 10월 18일

위임인 (주주)	성명 (법인: 상호)		(인감 날인)
	주민등록번호 (법인: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, 외국인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		

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(주요 안건 설명자료)

1. 제 1 호 의안 관련 : 별지 정관 신규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제 2 호 의안 관련 : 신입이사 선임 승인의 건

구분	성명	생년월일	추천인	주요약력
사내이사 (등기, 선임)	김영대	1964.04.21	이사회	현 - (주)씨프로 영업전략본부장 / 상무 전 - 한화테크윈 아시아 영업담당 / 상무보 - 한화테크윈 비상근 고문 -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

3. 제 3 호 의안 관련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
가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

회사 주요 인력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함으로써 높은 경영 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

나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, 그 행사에 따른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, 그 행사가격, 기간 기타조건의 개요

구분	내용
부여대상	회사 임직원 총 53 명
부여방법	보통주 신주발행 교부
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	기명식 보통주 213,200 주 (현재주식발행총수의 2.61%)
행사가격 및 행사기간	1. 행사가격 : 6,000 원 2. 행사기간 : 2024 년 10 월 19 일 ~ 2027 년 10 월 19 일
기타 조건의 개요	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, 당사 정관,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.

[별지]

### 정관 신규조문대조표

변경 전 조문	변경 후 조문
<p>제 12 조 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「상법」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·감사 또는 피용자 및 「상법 시행령」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·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. 다만,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</p> <p>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「상법」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·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⑤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할 수 없다</p> <p>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</p>	<p>제 12 조 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본 회사는 임직원 등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보통주식으로 한다. 단,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본 회사의 설립,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임직원 (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2 항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)</p> <p>2.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5 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</p> <p>3. 대학</p> <p>4.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6 항 각호의 연구기관</p> <p>5. 본 회사가 인수한 기업(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임직원</p> <p>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3 년이 지난 날부터 3 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p>

<p>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</p> <p>3.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</p> <p>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 <p>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.</p> <p>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(또는 종류주식)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</p> <p>2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(또는 종류주식)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</p> <p>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</p> <p>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날부터 3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</p> <p>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</p> <p>3. 본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</p> <p>4.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 <p>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(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(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)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줄 경우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 54 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.</p> <p>1.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</p> <p>가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 54 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(이하 이 조에서 "부여 당시 시가"라 한다)</p> <p>나. 해당 주식의 권면액</p> <p>2.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</p> <p>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본조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</p> <p>2.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[(부여 당시 시가 - 행사가격) × 주식매수선택권 행사</p>
--	---

	<p>대상 주식수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 명마다 5 억원 이하일 것</p> <p>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3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,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p>
--	---